

진안군 공고 제2019 - 100호

## 2019년 진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진안군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주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8일

# 진 안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진안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업물량 : 100대(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 변경)
  - 일반 : 50%, 우선지원 : 30%, 사회적 공헌·약자\* : 20%
-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기간

- 2019. 1. 28.(월) ~ 2. 20.(수) 09:00 ~ 18:00

### 접수처 : 진안군 읍·면사무소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지원대상 (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 진안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 법인 및 동일 소유자 차량의 경우 지급대상 1대로 제한**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일반 : 대상물량의 50%>**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가. 영업용(화물용)→농업용→자가용 순으로 선정
    -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최초등록일이 빠른 차순위자
- 단, 차순위 접수자가 없을 경우 신청기간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우선지원 : 대상물량의 30%>**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2.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00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3.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 \* 다만, 우선지원 대상 신청건수가 계획물량의 30%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외 가능

**<사회적 공헌·약자 : 대상물량의 20%>**

1. 연식이 오래된 차량(최초 등록일 기준, 신청기간 내 접수차량)
    - \*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 대상자 선정 순위
    - 가. 영업용(화물용)→농업용→자가용 순으로 선정
    - 나. 가.순위도 같을 경우 주행거리 많은 차량 순으로 선정
  2. 신청자가 대상물량에 미달한 경우 일반 물량에 포함하여 대상자 선정
- \* 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 □ 지원금액

-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차량등록제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발행한 분기별 기준가액표를 비교하여 가장 유사한 기준가액을 적용 지급하되, 그 상한액과 지원율은 아래와 같음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차량기준가액의 200%(총중량 3.5톤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 한 액 (기본+추가 지원)	지 원 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165	100%	-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000		

-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2)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3)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 □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0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2000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다만,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수출말소 제외)된 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각종 과태료 등 체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 □ 저소득층(생계형)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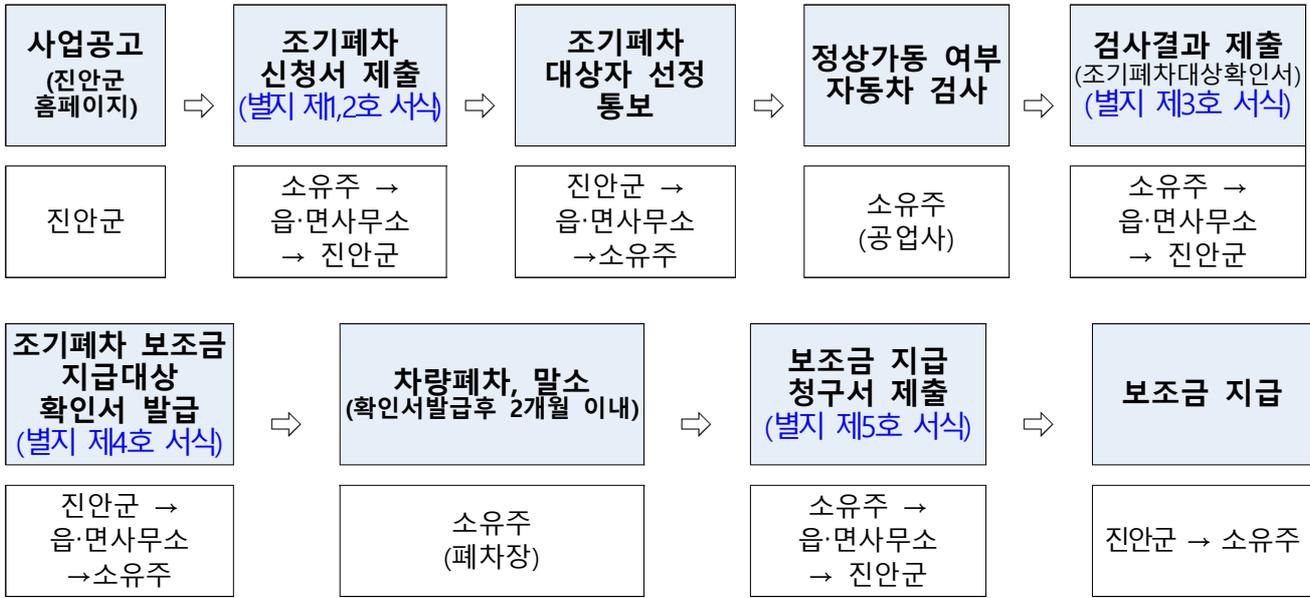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

※ 보조금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신청 전 1개월 이내 발급)를 첨부한 차량 소유주

###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으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수급자인 경우 인정
  - ※ 지입차량 소유주가 생계형 차량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제출

## □ 보조금 지원절차



## □ 작성 및 신청 안내

### ○ 조기폐차 신청 : 읍·면사무소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회적 공헌·약자 증명서 사본(대상자에 한함)

###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 차량 소유주→공업사→읍·면사무소→진안군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자만 해당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제출(10일 이내) : [별지 제3호 서식]
  - 대상차량확인(차량검사소)
  - 대상차량의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등이 양호해야 함
  - 점검 업소명(도장),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유의사항】**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함(사고 등으로 인해 폐차상태의 차량이거나 신청 전 미리 폐차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진안군→읍·면사무소→소유주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별지 제4호 서식]
- **폐차·말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 이내**
  - ※ 2개월 이내 미이행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 : 소유주→읍·면사무소→진안군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별지 제5호 서식]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주(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주) 명의의 통장 사본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보조금 지급** : 진안군→소유주
  - 차량 소유주 통장 입금
  -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또 다른 소유자의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및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별지 제3호 서식(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4. 별지 제4호 서식(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5. 별지 제5호 서식(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6. 참고사항 1(위임장)
7. 참고사항 2(진안군 관내 자동차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현황)



< 별지 제2호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진안군수 귀중



< 별지 제4호 서식 >

확인번호	<b>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b>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input type="checkbox"/> 연식( )년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input type="checkbox"/> 적재중량( )톤	<input type="checkbox"/>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input type="checkbox"/>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 가액	기본	원 (₩ )	
		추가	원 (₩ )	
<p>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진안군수 (인)</b></p>				
<p>※ 참고사항</p> <p>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p> <p>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시장·군수 또는 철차대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일 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_\_\_\_\_ 는(은) 수임자 \_\_\_\_\_ 에게  
차량번호 \_\_\_\_\_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진안군수 귀하

## 진안군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장 현황

NO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업무범위
1	안천자동차공업사	432-4141	진안읍 안천면 진무로 3023	②
2	무진장공업사	433-7711	진안군 진안읍 전진로 3136-9	③
3	진안자동차공업사	433-1300	진안군 진안읍 전진로 3152-4	②

- ① 승용자동차와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중 대형자동차를 제외한 정기검사(연간9천600대를 초과하여 검사할수 없음)
- ②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 ③ 모든 자동차의 정기검사